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2
----------	-----

2021. 12. 30.(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1월 23일

-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6대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에 대한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수탁기관 :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 위탁방법(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 위탁사무내용
 -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 화장품산업 관련 도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
 -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초 민간위탁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으나, 절차적 하자로 동의를 받지 않아 재위탁 시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함.

※ 최초위탁 : 2017.01.02. ~ 2021.12.31.(5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충청북도에서 전략적으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자 '17년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한 기관으로 화장품 임상시험, 인증, 평가 등 화

장품임상연구지원의 주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 '17년부터 5년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600개의 기업 지원하고 및 도내와 타지역 기업 1,173곳이 센터를 이용하였고, 17년 개원 시 경영지수가 적자폭이 컸으나, '20년도 흑자로 전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였으며, 4,026건의 시험·인증 추진 및 R&D 연구과제(국비 및 지방비 사업) 14건을 수행하는 등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타지역 기업들의 의뢰가 늘어나 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도내 화장품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어 재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기업지원이라는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도내 화장품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며, 관리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82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6대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5
- 시설현황 : 연면적 4,220.8㎡/부지 8,924㎡('17.4.11. 준공)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수탁기관 :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 위탁방법(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 위탁사무내용
 -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 화장품산업 관련 도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
 -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없음(시설사용료 수입과 입주기관 관리비 분담으로 운영)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붙임
-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관계법령 붙임

3. 관계법령 : 붙임

-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5조 (의회동의 및 보고)
 -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제10조 (재계약·재위탁)
 -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I. 추진근거

-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II.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최초위탁) 2017. 1. 1. ~ 2021. 12. 31. (5년)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
- 수탁기관 :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 예산액 : 없음(시설사용료 수입과 입주기관 관리비 분담으로 운영)
- 위탁사무
 -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 화장품산업 관련 도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
 -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기관 조직
 - 수탁기관(오송바이오진흥재단 / 운영기관)

(단위 : 명)

계	사무국장	부장	팀장	6급	7급이하	기타 (전문계약)
25/25	1/1	2/2	4/4	9/10	7/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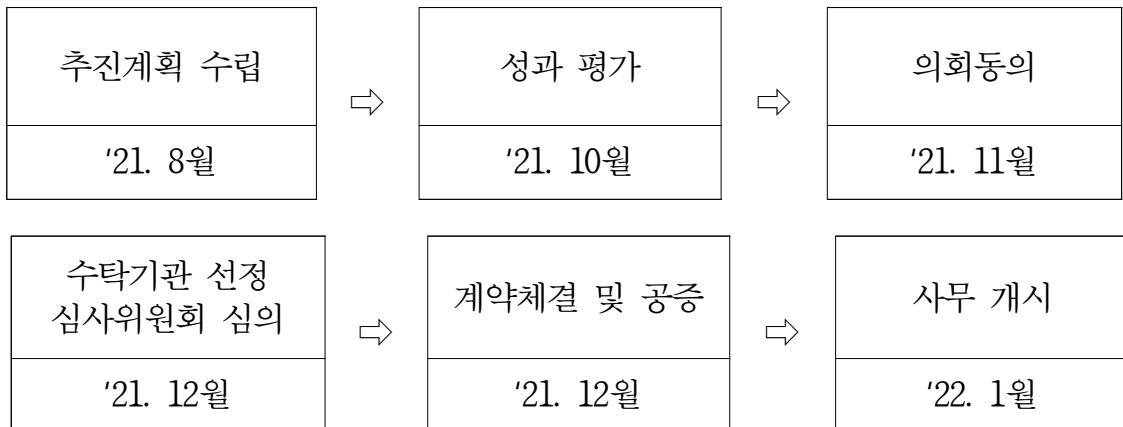
※ 현원 25명 : 전입 4명(일반3, 전문계약1), 겸직(공무원) 21명

⇒ 운영인력은 화장품 뷰티산업팀 5명이 전담함

< 現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위탁현황 >

- 위 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5
- 규 모: 연면적 4,220.8m²/부지 8,924m²('17.4.11. 준공)
- 사 업 비: 176억원(국비 50, 도비 126) / (건축비 100, 장비비 60, 부지매입비 16)
- 수탁기관: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운영) ※ 위탁기간 : 17.1.1. ~ 21.12.31.
- 입주기관: 세명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충북테크노파크(TP)
- 주요장비: 44개 시스템 40품목
- 주요기능: 화장품 연구 및 인체효능·안전성 평가 등 중·소기업 지원

Ⅲ. 추진일정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1. 11월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1. 12월
- 수탁사무 개시 : '22. 1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의2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 위탁방법 : 재위탁
- 시설규모 : 연면적 4,220.8㎡/부지 8,924㎡('17.4.11. 준공)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 (최초위탁) '17.01.2~'21.12.31. (5년)
- 예산액 : 없음(시설사용료 수입과 입주기관 시설 관리비 분담으로 운영)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주요기능〉

-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
-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품질·안전성 등 검사·시험 평가
-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 화장품산업 관련 도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비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충청북도 화장품 산업육성을 위해 화장품 임상시험, 인증, 평가 등을 연구 지원하는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로 - 화장품산업관련 연구시설로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임상연구 분야는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전문인력을 상시 비치할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 및 안정성을 보장 - 직영할 경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③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센터 운영의 수입(사용료 수익)이 발생하여, 별다른 위탁료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함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임상 및 인증 평가 업무는 민간의 전문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기술서비스 효율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지휘·감독)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화장품임상연구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방의 관련 기업들이 임상연구의 어려움이 존재 - 지자체에서 민간의 전문 분야인 화장품임상연구센터를 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기업들에 서비스를 공급 	

□ 검토결과 : 적정

-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 충청북도 전략육성산업인 화장품 산업육성을 위해 '17년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우리도가 건립한 기관임
 - 수도권 위주의 화장품임상연구를 지자체에서 건립하여 민간의 전문성 아래 위탁사무를 추진하여 지방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지난 5년간 총 1,173개 화장품 기업을 지원했으며, 19년 이후부터는 타지역 기업들의 의뢰가 늘어나 센터가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이 안정화되고 있음
- ⇒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1.11.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21.12.
- 수탁사무 개시 : '22.01.

I 평가 개요

○ **근 거**

-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성과평가)

○ **기 간**: 2021. 9. 27. ~ 9. 29.(3일간)

○ **방 법**: 서면평가 ※ 코로나19 확산 차단

○ **평가항목**: 4개 분야 10개 항목

분 야	평 가 항 목
공공성평가	1. 도내 화장품 기업 지원 활성화
	2. 센터 이용 활성화
	3. 연구시설 타지역 경쟁력 확보
경영수지평가	1. 수입-지출의 건전성
	2. 향후 경영수지 개선 여력
	3. 원활한 시설 관리 능력
사업수행 능력	1. 시험·인증 수행 실적
	2. R&D 연구과제 수행 능력
	3. 사업수행인력 확보 및 전문성
지역사회기여	1. 지역 산업, 일자리 등 기여정도

○ **평가등급(항목별 10점)**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점이하 9점이상	9점미만 8점이상	8점미만 6점이상	6점미만 4점이상	4점미만

II

평가 결과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배점 평균	내용
전체 평가 점수		우수	9.2	
공성평가	1. 도내 화장품 기업 지원 활성화	우수	9.3	-17년~20년 동안 도내 600개 기업 지원 -기업지원 수 연평균 35.4% 증가
	2. 센터 이용 활성화	우수	9.6	-총 1,173개 도내, 타지역 기업이 이용 -기초피부연구소, 화장품연구회 등 센터 활성화 지구노력
	3. 연구시설 타지역 경쟁력 확보	우수	9.6	-19년 이후부터 타지역 기업의 의뢰가 도내 기업 이용보다 늘어날 정도로 지역경쟁력 갖춰짐
경영수지평가	1. 수입-지출의 건전성	양호	8.7	-17년 센터 개원으로 초기 경영지수가 적자폭이 컸으나, 20년부터 흑자 전환 이루어짐
	2. 향후 경영수지 개선 여력	우수	9.8	-충북연구원 용역결과, 22년~26년간 순익이 4.8억원 증가가 추정 -향후 지속적으로 순익 증가 예상
	3. 원활한 시설 관리 능력	양호	8.9	-소방안전관리, 건물관리, 시설물 수리 등 연간 3천만원 예산 수립 -장비수리비를 위한 2천만원 예산 수립
사업수행능력	1. 시험인증 수행 실적	우수	9.3	-총 4,026건의 시험,인증을 추진 -5년간 6,738백만원의 목표수입에 8,019백만원 달성(119.1%)
	2. R&D 연구과제 수행 능력	양호	8.9	-국비 및 지방비 사업 14건, 총사업비 3,183백만원 사업 추진
	3. 사업수행인력 확보 및 전문성	양호	8.4	-재단 전담인력 5명(화장품산업팀) -화장품 인증 및 임상 연구 전문인 37기공(세명대,KTR,충북IP) 컨소시엄 연구인력 배치(28명)
지역사회기여	1. 지역 산업, 일자리 등 기여정도	우수	10.0	-저렴한 임상비용 도내기업에 제공 -타지역 기업 이용으로 지역경제 기여 -충북도민 대상으로 피험비 지급으로 고용 활성화(약2만5천명)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화장품 신소재·제품 연구 개발, 시험·평가기능 전문화와 고도화 촉진 및 민간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중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화장품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협회, 기업 또는 법인(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2. 연구기관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 등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재계약·재위탁)①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5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